

프랑스, 2010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반영

□ 프랑스는 환경과 지속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논의해온 탄소세를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하여 2010년 예산안에 반영

○ 예산안에 반영된 부과액과 실시 시기

- CO<sub>2</sub> 톤당 15유로로서 실제로는 연료유 1리터 당 3~4센트가 부과될 것임
- 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호가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음
- 내년 1월 실시예정이나 2010년 3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감안, 수개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

○ 정부는 탄소세의 소득 역진 효과 상쇄 조치 추진

- 연소득 25,926유로 이하의 저소득층에는 실업 혜택 확대, 근로자 사회보장부담금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고려

□ 탄소세 도입 과정 : 로카르 위원회 7월 28일 보고서 제출, 그르넬 환경법 7월 23일 상하양원 통과

이번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 억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상승 분위기 속에 사르코지 대통령의 의지와 EU차원에서의 탄소세 도입 검토 등에 영향을 받음

○ 로카르 위원회(**commission Rochard**)의 보고서(**Rapport de la conférence des experts et de la table ronde sur la contribution Climat et Énergie**)에 담긴 탄소세 실시안

- 목적 : '소비자 및 산업계 행동양식에 변화' 유도 지향,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경제, 에너지 소비 절약, 녹색성장을 위한 사회 인식 제고
- 실시 시기: 2010년 1월
- 부과금: 탄소 배출 1톤당 32유로 부과. 이를 통해 연료 1리터 당 무연휘발유 7.7센트, 디젤유 8.5센트로서 연료 1리터 당 가격이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부과금을 점차 올려 2030년에는 탄소 톤당 100유로로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
- 예산효과: 세수 80억 유로 증가(그중 가계부담 43억 유로) 전망  
도시 일반가계는 연간 160유로, 난방유를 쓰는 부유층은 연간 300유로 추가 부담 추산

#### ○ 그르넬 환경법(Grenelle de l'environnement)

-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도로 5년 임기동안에 실시될 환경과 지속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 7월 개최된 **그르넬 환경원탁회의(La Cumbre Grenelle del Medio Ambiente)**를 통해 동년 10월 20개 항목 정책이 제안되었고 2008년 3월 제안내용을 실시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 제출되었음.
- 이 중 환경 분야 주요 항목으로서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1/4로 감소,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가능에너지원** 비중을 2007년에 9%에서 2020년에는 23%까지 증가 등이 있음

#### ○ 과거 탄소세 부과 검토

- 프랑스는 과거 조스팽 정부 하에서 2002년 1월부터 오염세 명목으로 유류에 리터 당 7센트를 부과할 것을 검토했으나 보류한 바 있음.

#### □ 탄소세 부과 내용에 대한 평가

- 정책 전문가, 환경시민단체는 적용되는 탄소세가 너무 적어서 저탄소 관련 사회 인식에 큰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을 우려
- 정부, 산업계는 일단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찬성

<파리사무소 제공>